



국내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정의
문제

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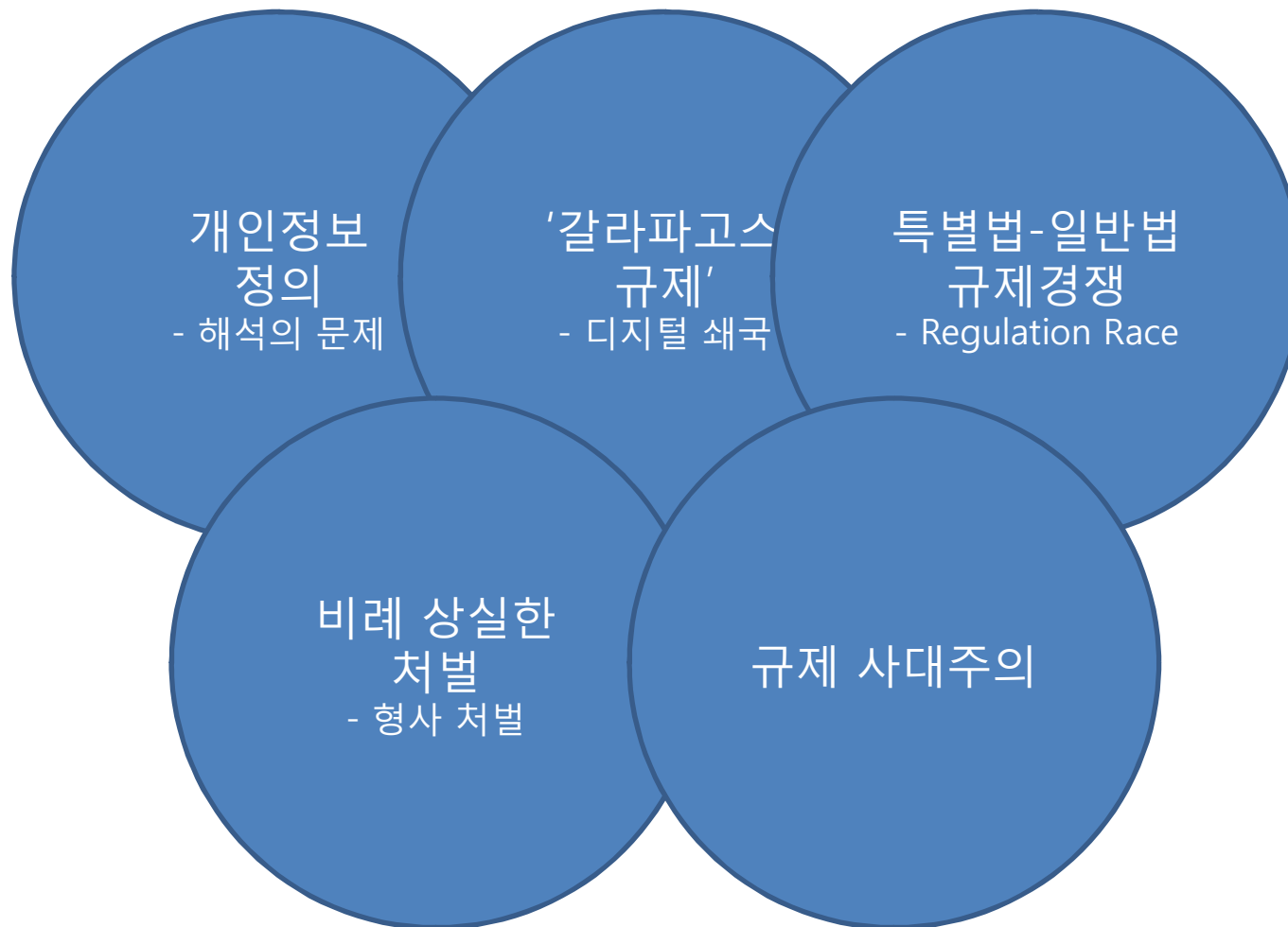
문제

문제

의
문제

1 국내 개인정보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 국내 제한적 규제(법제)의 존재, 특별법과 일반법간
규제 경쟁(Regulation Race), 비례를 상실한 처벌, 규제 사대주의 등



2 개인정보 정의의 문제

정의 규정 국제적
법 적

개인정보 정의 문제



에
에 대
의



‘
개인정보’
에



의 제
d r r

3

제

비전문적 관료에 의한 ‘한탕주의’ 규제 양산
디지털 쇄국화 – 해외사업자의 국내 진출 제한 & Vice Versa

국내 정 제

정보법의 개인 정보 제 정보 r
내 제 개인정보 내 에 인
개인정보 제 제 정보 의 개인정보 정 의 문제
법 인 인제 에 의 인 인 제
제 제 의 제 정보 의 제 의에 의
, 인 의, 의보
인의 의 ‘ 에 의 ’ 의 인
의 r 제 에
정보 M 인 보

4 법 법의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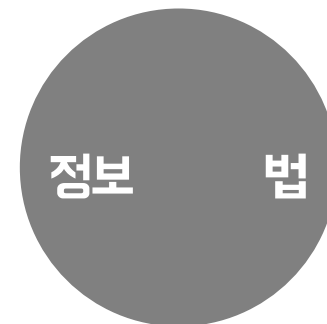
일반법이 특별법에 비해 늦게 도입
이로 인한, 상호 규제의 경쟁 심화

제



늦게 태어난 장자

대



일찍 태어난 서자

보

5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 수행자가 ‘범법자’가 될 수 있는 상황

- 개인정보 수집 시 아래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②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③ 개인정보의 보유

위반 시 벌칙 규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100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 사용자 동의 또는 법률에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만 사상, 신념, 민감정보 수집 가능

위반 시 벌칙 규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100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 제공

위반 시 벌칙 규정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음

①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② 법령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
③ 영업상 목적상 불가피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경우

- ②와 ③의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제

위반 시 벌칙 규정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용자로부터 동의 받은 목적 등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 이용 금지

위반 시 벌칙 규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100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시 아래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①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
③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④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 요금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음

위반 시 벌칙 규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100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와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

위반 시 벌칙 규정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 취급위탁 시 아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①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받는 자 ② 개인정보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위반 시 벌칙 규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100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개인정보 취급방식에 공개하거나 전지 일한 경우에는 예외

위반 시 벌칙 규정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경우 홈페이지 게시,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함

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②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주소·전화번호 및 그
③ 이용자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과

위반 시 벌칙 규정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영업양수자 등은 당초 제공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

위반 시 벌칙 규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지정

위반 시 벌칙 규정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 취급방식을 정하여 이용자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

위반 시 벌칙 규정 •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 누출등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아래의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 신고하여야 함

① 누출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② 누출등이 발생한 시점 ③ 이용자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의 대응 조치 ⑤ 이용자가 상담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부

위반 시 벌칙 규정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

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②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③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④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⑤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⑥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 ②~⑥까지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한 경우

위반 시 벌칙 규정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1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됨

-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실을 알면서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제공받는 행위 금지

위반 시 벌칙 규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집·이용목적 달성·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

- 이용자가 서비스를 3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

위반 시 벌칙 규정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 또는 제공 요구, 동의철회 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함

- 동의철회,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 보다 쉽게 해야 함

위반 시 벌칙 규정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오류 정정을 요구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할 때까지 해당 개인정보의 이용 또는 제공 금지

위반 시 벌칙 규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공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포함)을 연 1회 이상 이용자에게 통지

위반 시 벌칙 규정 •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만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위반 시 벌칙 규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100 이하 과징금 부과 가능

6 제 대 의

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규제를 ‘선제적’으로 도입하여,
전 세계에서 개인정보가 가장 잘 보호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압박

RT @haeminsunim: 왜 비빔국수는 만원이 넘으면
않되고 파스타는 만원이 넘는 것이 당연하지요? 우
린 안에 있는 문화적 사대주의 참으로 심각합니다.

1) 동의

PAYCO

PAYCO 가입을 환영합니다.

☒ 이메일로 가입 ☐ 휴대폰 번호로 가입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영문, 숫자, 특수문자 8-15자)

비밀번호 재입력

☐ 아래 내용에 모두 동의합니다.

- ☐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보기](#)
- ☐ PAYCO 회원 약관 [보기](#)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보기](#)
- ☐ PAYCO 서비스 약관 [보기](#)
- ☐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보기](#)

- ☐ 만 14세 이상입니다.
- ☐ 위치기반 서비스 약관 동의(선택) [보기](#)
- ☐ 홍보성 정보 수신 동의(선택)

회원가입

PayPal

PayPal은 사용자의 보안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전 세계 수많은 온라인
판매점에서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름 중간이름(필요없음)

성

생년월일

국가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ID 번호

주소 입력란 1

주소 입력란 2(선택사항)

시

시/도/주 우편번호

휴대폰 +82 전화번호

☐ 본인은 PayPal의 사용자 계약 및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읽고 이에 동의하며 법적으로 성년임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PayPal 계정에서 언제든지 커뮤니케이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동의 및 계정 생성

© 1999-2017 PayPal Inc. 개인정보 취급방침 이용약관 문의하기 피드백

소비자에게 알림 - PayPal의 선불 지급 수단 소유자인 PayPal Pte. Ltd.는 싱가포르 통화 당국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PayPal 사용자는 이용약관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동의

<정보통신망법>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없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적인 동의를 받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한 경우
2.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제22조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② 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그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5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에 따른 제공에 대한 동의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받아야 하고, 이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5., 2016.3.22.>

참고③ 동의 사례 (예시)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목적	항목	보유기간	동의여부
이용자 식별 및 본인여부 확인	성명, 아이디, 비밀번호, 비밀번호 힌트	회원탈퇴 후 5일까지	☐ 동의함 ☐ 동의안함
계약 이행을 위한 연락 인원 등 고객 고충 처리	연락처(이메일, 휴대전화번호)	회원탈퇴 후 5일까지	
만14세 미만 아동인지 확인	법정 생년월일	회원탈퇴 후 5일까지	

※ 000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이므로 동의를 해 주셔야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목적	항목	보유기간	동의여부
새로운 상품 안내 마케팅(전화,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서비스 탈퇴 후 5일까지	☐ 동의함 ☐ 동의안함
맞춤형 광고	쿠키정보, 쿠키를 통해 수집되는 행동정보	서비스 탈퇴 후 5일까지	☐ 동의함 ☐ 동의안함
제휴서비스 이용시 포인트 적립 연계	휴대전화번호	제휴서비스 종료 후 5일까지	☐ 동의함 ☐ 동의안함

※ 아래 제3자 동의 항목의 0000에 대한 제3자 제공에도 동의해 주셔야 포인트 적립이 가능합니다.

※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도 000서비스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선택】 개인정보의 취급위탁에 대한 동의

수탁자	목적	동의여부
0000	위탁자((주)000)의 부가서비스 유치를 위한 마케팅 대행	☐ 동의 ☐ 동의안함

※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도 000서비스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선택】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 받는자	목적	항목	보유기간	동의여부
0000	제휴서비스 이용시 포인트 적립 연계	휴대전화번호	제휴서비스 종료 후 5일까지	☐ 동의함 ☐ 동의안함
0000 (판매자)	온라인 쇼핑 구매자에게 상품 배송	구매자정보 : 아이디, 이름, 주소, 휴대전화번호 수령인 정보 : 이름, 휴대전화번호, 주소	배송 완료 후 5일까지	☐ 동의함 ☐ 동의안함

※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도 000서비스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동의

문제점

- ① Global 동의 체계와의 차이 (Mobile Application Global One-Build)
- ② 형식적 동의에 의한 책임 전가 (사업자 → 이용자)
- ③ 습관적 동의에 의한 동의 형해화
- ④ 동의 여부, 내용, 변경 등에 대한 사후적 확인 곤란
- ⑤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자 통제권 행사 곤란

2)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온라인마케팅 포털 아이보스

휴면계정 전환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보스입니다.

보스님께서서는 지난 **1년간** 로그인한 기록이 없는 관계로, 보스님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 보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휴면계정으로 전환**하고자 관련 사항을 사전 공지드립니다.

휴면계정 처리를 원치 않는 회원님은 **2015년 8월 17일까지**

아이보스 사이트 (www.i-boss.co.kr) 에 1회 이상 로그인하시면 정상적으로 서비스 및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휴면 아이디로 전환될 경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리터 등을 휴면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으며, 다양한 최신 정보가 담긴 아이보스 뉴스레터를 받아보실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로그인 하시면, 기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보스 로그인 하기 >

시행 일자	2015년 8월 18일 (화)
주요 내용	아이보스에서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신 회원님의 개인정보는 휴면 계정으로 처리하여 별도 분리하여 보관 또는 폐기하게 됩니다.
미이용 기준	1년 이상 로그인 기록이 없는 회원

SAJO 사조그룹

Life is Delicious!

사조그룹 온라인회원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사조그룹입니다.
사조그룹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개인정보의 파기) 2항에 의거하여 정기 미사용 회원님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분리 또는 파기해야 함에 따라 본 안내메일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이용을 원하실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8월 17일까지 1회 이상 로그인해주시어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대상 회원	1년 이상 장기 미 이용 회원
· 시행 일자	2015년 8월 18일(화)
· 대상 항목	온라인 회원가입 시 수집된 개인정보(이름, 아이디, 패스워드 등)

사조그룹을 사랑해주시는 고객분께 믿음가는 안전한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① 법 제2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2.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달리 정한 기간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민원인 - '정보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일정기간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자'는 적용대상이 아닌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등 관련)
안건번호 15-0725, 회신일자 2015-12-17

1. 질의 요지

가. 생략

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그 달리 정한 기간”은 지났으나,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5년의 보존의무기간은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지?

2. 회답

가. 생략

나. 질의 내용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 또는 “이용자가 정한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른 5년의 보존의무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더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8

개인정보 유효기간 단축

◎ 개정 내용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1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법령 ◎

법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2.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달리 정한 기간
-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해설 ◎

- 개정 법률 이전의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3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으나,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할 때 3년은 지나치게 장기간이라는 지적에 따라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였습니다.

2)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문제점

- ① Global 개인정보 관리체계와의 차이
- ② Big Data / AI 시대에 반하는 정책
- ③ 해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Counter-Intuitive 정책
- ④ 과도한 비용 부담
- ⑤ 결제 및 거래내역, 상담내역, 로그기록 등 실익이 없는 정보까지 대상으로 하여 과도한 비용 발생

3)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네이버에서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안녕하세요, 네이버입니다.
항상 **NAVER**을 믿고 이용해주시는 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이버(주)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0조의2(개인정보 이용 내역의 통지)에 1회 이상 모든 네이버 회원님들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회원 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시 제공하여 주신 소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개인정보 내역은 **네이버 프라이버시센터**에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이용내역 확인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FAQ

네이버 모든 회원님께 발송 드리는 이메일입니다.
네이버에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신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올레유직	[olleh유직]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 개인정보 취급방침 자세히 보기 ※ 수	8월 17일
옥션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 - 앞으로의 인터넷쇼핑, 옥션입니다. 이미지가	8월 15일
인터파크	[인터파크]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드립니다. - 본 메일은 2013년 08월 13일	8월 14일
G마켓	쇼핑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	8월 14일
대한항공	[대한항공] 개인정보 이용 내역 안내 - www.koreanair.com [e-mail 발송 정보	8월 14일
U+Box	[U+Box] 회원님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내역을 안내해드립니다. - U+ Box 사	8월 14일
홈플러스 인터넷쇼핑몰	[홈플러스 인터넷쇼핑몰] 홈플러스(주) 개인정보 이용내역 안내 - 회원제 사	8월 12일
sa.noreply	[Samsung account] 회원님의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내역을 안내해드립니다	8월 12일
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홈페이지 가입고객님께 알려드립니다. - 2013-08-12 개인정보 :	8월 12일
T store	[T store]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	8월 8일
현대Hmail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알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8월 4일
Q멤버스	[기아자동차 Q멤버스]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안내 - 본 메일은 "정보통신망	8월 2일

3)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정보통신망법>

제30조의2(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집한 이용자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제24조의2에 따른 제공 및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포함한다)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연락처 등 이용자에게 통지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2.>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 통지 주기 및 방법, 그 밖에 이용내역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 시행령>

제17조(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① 법 제30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법인인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를 말한다)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말한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정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2>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2.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는 제외한다.
3. 법 제25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처리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③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예시

▶ (수집·이용 목적)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기재)

▶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기재)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관련)

⇒ 개인정보를 제공 받은 자 : (개인정보 제공 받은자 기재. 다수일 경우 00등 00사)

⇒ 제공 목적 : (제3자 제공과 관련해서 동의를 받은 목적 중 해당사항 기재)

⇒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기재)

▶ (개인정보 취급위탁 관련)

⇒ 개인정보의 수탁자 : (개인정보를 취급위탁 받은자 기재. 다수일 경우 00등 00사)

⇒ 취급위탁 목적 : (개인정보 취급위탁 업무 내용 기재)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이나 취급위탁시 실제로 제공·위탁한 내역을 통지하면 됩니다.

◎ 시행령 규정사항 ◎

○ 이용내역 통지의무 대상

-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용내역 통지 정보의 종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및 수집한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와 그 제공 목적 및 제공한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취급 위탁을 받은 자 및 그 취급위탁을 하는 업무의 내용

○ 이용내역 통지 주기 및 방법

-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는 전자우편·서면·팩스·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하여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

문제점

- ① Global 표준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 효과성 입증 부재
- ② Phishing 공격 위험
- ③ 개인정보처리방침을 Copy&Paste
- ④ 리소스 낭비 (5% > 5% > 1%)
- 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및 사업자 자체 휴면제도와의 충돌

4) 모바일앱 접근권한 동의제도



앱 설치 시 접근권한 고지에 대한 예시 (음악 앱)

1단계	2단계												
[안드로이드폰] 설치 광고 포함 10 다운로드 수 45,673,374 호 4.5 평점 소셜 음악 항목 사진으로 공유해보세요. 빠르고, 무료이며, 재미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필수적 접근권한]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th>이유</th></tr> </thead> <tbody> <tr> <td>저장 권한</td><td>음반 이미지, 곡 재생파일 임시저장</td></tr> <tr> <td>전화 권한</td><td>재생 중 전화 상태 체크,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td></tr> <tr> <td>SMS 권한</td><td>수신한 SMS 인증번호 자동 입력</td></tr> </tbody> </table> [선택적 접근권한] <table border="1"> <thead> <tr> <th>항목</th><th>이유</th></tr> </thead> <tbody> <tr> <td>위치 권한</td><td>위치기반 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td></tr> </tbody> </table> ※ 선택적 접근권한의 허용에는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항목	이유	저장 권한	음반 이미지, 곡 재생파일 임시저장	전화 권한	재생 중 전화 상태 체크,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	SMS 권한	수신한 SMS 인증번호 자동 입력	항목	이유	위치 권한	위치기반 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
항목	이유												
저장 권한	음반 이미지, 곡 재생파일 임시저장												
전화 권한	재생 중 전화 상태 체크, 휴대폰 번호로 로그인												
SMS 권한	수신한 SMS 인증번호 자동 입력												
항목	이유												
위치 권한	위치기반 상품 추천 서비스 제공												
[아이폰] ★★★★☆ (136) Apple Watch 앱 제공 세부사항 리뷰 관련 콘텐츠 설명 은 세상의 소중한 순간을 포착하여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곳입니다. 친구나 가족을 불러모아 최근 소식을 확인하거나 관심 있는 정보를 공유한 계정을 팔로우하여 팔로우하세요. 영이 낚는 사람들과 함께 낚시의 크고 작은 다양한 순간들을 나만의 스타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더 보기													

4) 모바일앱 접근권한 동의제도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한다)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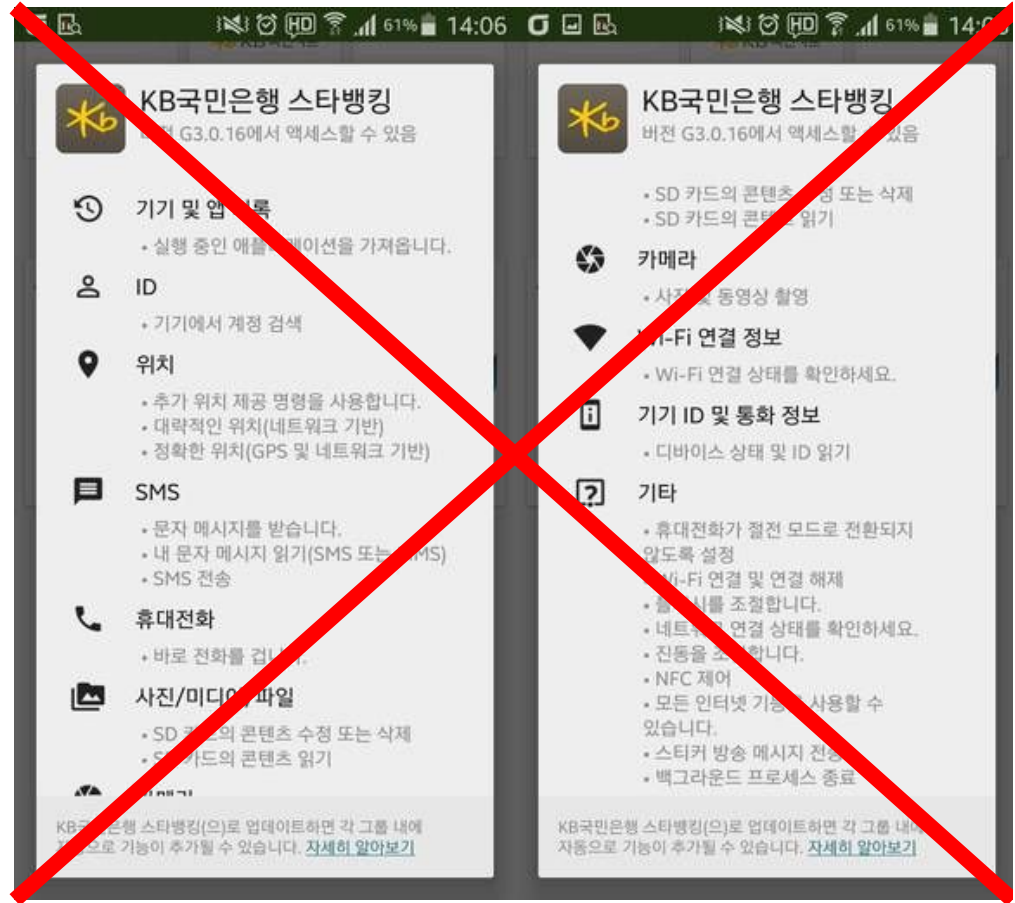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 아니한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기본 운영체제(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소프트웨어를 실행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말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공급하는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접근하려는 경우 접근권한에 대한 이용자의 동의 및 철회방법을 마련하는 등 이용자 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접근권한의 범위 및 동의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이용자 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모바일앱 접근권한 동의제도

문제점

- ① Global 표준에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 효과성 입증 부재
- ② OS 정책과 충돌
- ③ 필수 vs. 선택 동의 구분 모호
- ④ 이용자 동의 습관 강화 및 불안감 조성
- ⑤ PC vs. 모바일 구분 모호 (이동통신단말 규정)

5) 불법스팸 방지제도

쿠폰과 이벤트 정보를 위한

APP 푸시 받고 2천원 할인 쿠폰



COUPON 2,000원

스탬프 적립방법



마케팅
수신동의 설정

...



스탬프
미션 완료

...



쿠폰
다운로드

! 유의사항

- 본 이벤트는 모바일 앱 이용 회원에 한하여 참여가 가능합니다.
- 이벤트 기간 동안 회원당 1회 참여 가능합니다.
- 이미 마케팅 수신동의가 설정된 회원은 [푸시동의 스탬프 찍기] 버튼을 클릭 시 스탬프가 적립되며, 미설정된 회원은 '설정' 화면에서 '마케팅 수신동의'를 설정 후 [푸시동의 스탬프 찍기] 버튼을 클릭하여야 스탬프가 적립됩니다.

혜택정보(마케팅) 수신동의 변경



KB국민카드만의 다양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혜택정보(마케팅) 수신동의

KB국민카드만의 다양한 이벤트, 할인 행사,
신상품 안내 정보 등의 수신 동의 여부를 선택하실 수 있는
거래입니다.

DMURWICHERRY'S HARDWARE SECTOR

혜택정보(마케팅) 수신 정보 변경

구분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정보	변경하실 정보
카드관련 혜택정보(마케팅) 수신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부수 서비스 안내 수신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KB금융그룹 계열사 상품권유 수신			☒ 동의 ☐ 비동의
수신(이용권유) 채널 선택	전화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문자메시지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이메일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서면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5) 불법스팸 방지제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2.>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意的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意的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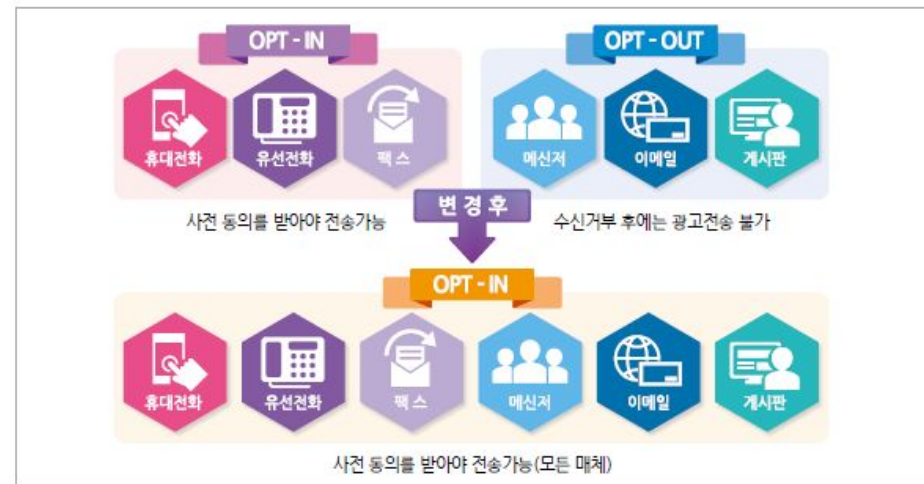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意的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意的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意的,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意的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意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불법스팸 방지제도

문제점

- ① Push Message까지 과도한 규제
- ② 매 2년마다 동의 확인에 따른 과도한 국가후견주의
- ③ 플랫폼 or 기득권 사업자에게 유리 (팝업 규제 X)
- ④ Mobile Messenger에서의 어색한 UX
- ⑤ 일반 서비스 안내까지 규제에 포섭 (게임 안내 등)

